



시 보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1756호 2026. 8. 31. (월)

공 고

- 「목포시 벤처기업과 지식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2
- 「목포시 건축물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3
- 목포시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회계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3
- 목포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38

회람							
----	--	--	--	--	--	--	--

발행 : 목포시 편집 : 홍보과 ☎ 061-270-8539

목포시 벤처기업과 지식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목포시 벤처기업과 지식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8. 31.

목 포 시 장

1. 개정이유

- 2026년 목포시 위원회 정비 및 관리계획에 따라 지식산업클러스협의회를 상설 운영 방식에서 안건 발생 시 구성·운영하는 방식으로 정비하여 해정의 효율성을 높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협의회 구성에 관한 조항 개정 (안 제12조 ①항)
- 협의회 위원의 임기 조항 개정 (안 제13조)

3. 개정 조례안 : 별첨

4.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5. 관계법령

- 「목포시 각종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 행정안전부 「2026년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

6. 관련부서 의견

- 부패영향평가 대상여부 : 의견없음
- 규제심사 대상여부 : 의견없음
- 성별영향분석평가 : 의견있음(반영완료)
 - 조례 개정안 제12조의 성별 균형 참여를 위해, 「양성평등기본법」 제 21조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들을 구성할 수 있도록 개선 요망

7. 예산 수반사항 : 해당없음

8. 입법예고 기간 : 2026. 8. 31. ~ 9. 21. (22일간)

9. 사전협의(승인)사항 : 해당없음

10.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6년 9월 21일까지 목포시장(전략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2)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법인·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3) 기타 참고사항

나. 의견제출처 : 58724,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수문로 32(남교동) 목포시청 전략산업과

다. 제출방법 : 우편, 팩스(061-270-4310), 직접방문 등

11.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청 홈페이지(<http://www.mokpo.go.kr>)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목포시청 전략산업과 에너지신산업팀(☎ 061-270-335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포시 벤처기업과 지식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목포시 벤처기업과 지식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협의회 구성)

- ① 협의회는 안건이 발생하면_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60인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제13조 (위원의 임기) 위원회의 임기는 안건에 대한 심의·의결이 종료되는 시점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 (협회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60인 이내로 구성한다.	제12조 (협회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u>안건이 발생하면</u>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60인 이내로 <u>성별을 고려하여</u> 구성한다.
제13조(위원의 임기) <u>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u>	제13조(위원의 임기) <u>위원의 임기는 안건에 대한 심의·의결이 종료되는 시점까지로 한다.</u>

【 관계법령 발췌서 】

목포시 벤처기업과 지식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및 기타 관계법령에 따른 벤처기업과 문화·지식·소프트웨어산업 등에 대한 유치·지원·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벤처기업지원센터”라 함은 벤처기업 및 그 지원시설을 집중적으로 입주하게 함으로써 벤처기업의 영업활동을 조장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2. “문화산업지원센터”라 함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영상·게임·방송·캐릭터·애니메이션·디자인·문화콘텐츠·멀티미디어 등 문화디지털 관련 기업 및 공예·전자출판산업기업과 그 지원시설을 집중적으로 입주하게 함으로써 첨단 문화기업의 영업활동을 조장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3. “소프트웨어지원센터”라 함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의 개발·제작·생산·유통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 및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과 관련된 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4. “지식산업”이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기타 관계 법령에 따른 문화·지식·소프트웨어기업·자연과학연구개발·엔지니어링서비스업과 이와 관련된 산업 등을 말한다.

제3조 (사업의 범위) 시장은 벤처기업과 지식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창업촉진 및 유치·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시유재산의 사용허가 또는 대부

2. 산·학·연·관 협력사업
3. 벤처기업과 지식산업기업 등 관련 지원시설의 설치·운영
4. 벤처기업과 지식산업기업의 육성사업을 하는 대학·단체 등의 행정 및 재정 지원
5. 벤처기업 및 지식산업기업 또는 그 관련기관 및 단체의 행정·재정 지원
6. 기타 벤처기업 또는 지식산업기업의 유치 및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장 각 지원센터의 운영

제4조 (입주자격) 각 지원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기업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벤처기업지원센터는 소프트웨어지원센터와 통합 운영하며, 조례 제2조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기준에 적합한 벤처기업 또는 벤처기업으로의 전환을 준비중이거나 창업중인 기업으로 한다.
2. 문화산업지원센터는 조례 제2조제2호의 기준에 적합한 문화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또는 창업중인 기업으로 한다.

제5조 (모집공고) 제4조에서 규정한 입주대상 기업은 시보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여 모집한다.

제6조 (입주기업 선정) ① 시장은 각 지원센터에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으로부터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 받아 사업의 타당성 등을 심사하여 입주자를 선정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입주기업의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의 심사는 목포시지식산업클러스터협의회 등에서 할 수 있다.
-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각 지원센터의 입주희망기업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한 벤처창업경진대회 등에서의 입상 또는 우수벤처기업으로 추천 및 확인된 경우에 해당되거나 중소기업청 지원을 받은 정보산업계열 대학창업보육센터의 졸업기업이 제2조 제3호에 따른 소프트웨어 지원센터에 입주를 희망할 경우에는 입주자 선정시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 ④ 시장은 입주자가 입주를 포기하거나 입주이후의 폐업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당해 시설 내에 입주할 수 있는 총 업체수의 5분의 1의 범위 내에서 예비입주자를

선정하고 순위에 따라 입주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사용) ① 제6조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된 기업에 대하여는 「목포시공유재산관리조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각 지원센터의 시설물 등의 사용을 허가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 기간은 3년으로 하되 입주기간 중 사업실적 등을 감안하여 1차례 연장할 수 있다.

③ 다른 지역에 소재한 벤처기업 또는 지식산업기업 등이 각 지원센터 등 기업집적 시설에 입주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소재지에 사업장 등록 등을 하여야 한다.

제8조 (사용료 등) ① 제7조에 따라 각 지원센터에 입주하는 입주자에게 입주보증금 및 사용료, 공공요금, 공용장비사용료, 관리비 등을 부과한다.

② 각 지원센터 사용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으로 하고 입주보증금, 공공요금, 공용장비사용료, 관리비 등은 별도로 정하여 징수한다.

제9조 (운영) ① 시장은 각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임명한 감독공무원의 지도·감독 하에 자율적 운영 책임을 지는 지원센터 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을 위촉하여 운영하거나 개인 또는 단체·법인·대학 등에 지원시설·장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운영에 소요되는 운영비·운영요원의 인건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소장 또는 운영요원의 자격 및 운영요원의 수, 위탁 운영자의 자격조건 등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장 벤처·지식산업기업의 육성 및 지원

제10조 (지식 및 벤처기업의 육성·지원) ① 시장은 벤처기업과 지식산업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벤처기업·지식산업기업,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교)와 국·공립연구소, 벤처기업 및 지식산업 관련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사업장을 제공하거나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목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하여 보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1. 벤처기업·지식산업기업이 생산한 제품 판매를 위한 시장 개척활동
 2. 투자촉진을 위한 투자유치 설명회
 3. 신제품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및 보유기술의 사업화 사업
 4. 기타 벤처·지식산업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② 시장은 벤처기업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시세 감면사항은 「목포시세감면조례」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장 지식산업클러스터협의회

제11조 (지식산업클러스터협의회의 설치) 벤처기업과 지식산업기업의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목포시지식산업클러스터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12조 (협의회의 구성)

- 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60인 이내로 구성한다.
-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③ 위원은 미래전략산업국장, 시의회 의원 2인과 관계기관·단체의 임원 또는 벤처기업과 지식산업기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 ④ 효율적인 협의회의 운영을 위하여 기능별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 벤처·지식산업에 대한 정책반영·지원을 받고자 관계 전문기관·단체 등의 임원 또는 전문가 중에서 약간명의 고문을 별도로 시장이 위촉 운영할 수 있다.
- ⑤ 전체위원의 심의·자문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거나 경미한 사안에 대하여는 각 분과위원 중에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 ⑥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전략산업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주사가 된다.

제13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4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기타의 사유로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한다.

제15조 (직무)

-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회무를 통할한다.
-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 (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분과위원회별로 심의·자문할 수 있다.

- 1. 각 지원센터 등 벤처·지식산업기업집적시설의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의 입주순위 결정
- 2. 각 지원센터 등 벤처·지식산업기업집적시설의 민간위탁의 타당성
- 3. 벤처·지식산업기업 육성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에 대한 행정 및 재정 지원의 타당성
- 4. 벤처·지식산업기업 및 그 관련기관이나 단체에 대한 행정 및 재정 지원의 타당성
- 5. 기타 각 지원센터 소장의 위촉, 벤처기업 및 지식산업기업의 유치·육성·지원과 관련되는 중요사항의 심의 및 자문

제17조 (회의)

- ① 협의회의 회의는 시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8조 (수당 등의 지급) 위원 또는 관계전문가가 회의에 참석하거나 위원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목포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의하여 수당 및 기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장 보 칙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목포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목포시 건축물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8. 31.

목 포 시 장

1. 개정 이유

- 2026년 정부합동감사 관련 및 「건축물관리법」 제30조2항 규정 개정 (2022.2.3.) 사항으로 「목포시 건축물관리 조례」에 반영코자 함.

2. 주요 내용

- 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2항제1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에 대한 내용 신설
- 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2항제2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에 대한 내용 신설

- 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2항제3호에서 “그 밖에 건축물의 안전한 해체를 위하여 건축물의 배치, 유동인구 등 해당 건축물의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 대한 내용 신설

3. 개정 조례안 : 붙임 1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2

5. 관계법령

- 「건축물관리법」 제30조(건축물 해체의 허가) 제2항

6. 관련부서 의견

- 부패영향평가 대상여부(감사실) : 의견없음
- 규제심사 대상여부(기획예산과) : 해당없음
- 성별영향평가 대상여부(여성가족과) : 의견없음

7. 예산 수반사항 : 해당없음

8. 입법예고 기간 : 2026. 8. 31. ~ 9. 21. (22일간)

9. 사전협의(승인)사항 : 해당없음

10. 의견제출

-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6. 9. 21. 까지 목포시장(건축행정과장)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2)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법인·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3) 기타 참고사항

나. 의견제출처 : (5861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양을로 203(용당동) 목포시청 건축행정과 건축안전팀

다. 제출방법 : 우편, 팩스(061-270-3590), 직접방문 등

11.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청 홈페이지(<http://www.mokpo.go.kr>)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목포시청 건축행정과(☎061-270-846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개정 조례(안) 1부.

목포시 조례 제 호

목포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목포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해체허가 대상) ① 법 제30조제2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란 해당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에 1.5배 이내에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1. 버스정류장

2. 횡단보도

3. 육교

4. 학교(어린이집, 유치원 포함)

② 법 제30조제2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란 2층 이상인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 있는 폭 20m 이상의 도로를 말한다.

③ 법 제30조제2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건축법」 제59조에 따라 맞벽으로 건축된 건축물을 동시에 해체하지 않고 어느 하나의 건축물 전체를 해체하는 경우

2. 건축물의 안전한 해체를 위하여 건축물의 주변여건을 고려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지하층이 없는 지상 1층(높이 6미터 이하) 건축물
2.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인 조립식판넬 또는 경량철골구조 건축물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2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 설>	제8조의2(해체허가 대상) ① 법 제30조제2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란 해당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에 1.5배 이내에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1. 버스정류장 2. 횡단보도 3. 육교 4. 학교(어린이집, 유치원 포함) ② 법 제30조제2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란 2층 이상인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 있는 폭 20m 이상의 도로를 말한다. ③ 법 제30조제2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건축법」 제59조에 따라 맞벽으로 건축된 건축물을 동시에 해체하지 않고 어느 하나의 건축물 전체를 해체하는 경우

2. 건축물의 안전한 해체를 위하여 건축물의 주변여건을 고려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지하층이 없는 지상 1층(높이 6미터 이하) 건축물

2.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인 조립식판넬 또는 경량철골구조 건축물

건축물관리법

제30조(건축물 해체의 허가) ① 관리자가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에는 특별 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이 장에서 “허가권자”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주요구조부의 해체를 수반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일부를 해체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건축물의 전체를 해체하는 경우

가. 연면적 500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

나. 건축물의 높이가 12미터 미만인 건축물

다. 지상층과 지하층을 포함하여 3개 층 이하인 건축물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해체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2.2.3.>

1. 해당 건축물 주변의 일정 반경 내에 버스 정류장,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 횡단보도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

2. 해당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건축물의 안전한 해체를 위하여 건축물의 배치, 유동인구 등 해당
건축물의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목포시 건축물관리 조례

○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인)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항목별 내용	찬성여부		의견(사유)	기타 참고사항
	찬성	반대		

입 법 예 고

「목포시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회계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8. 31.

목 포 시 장

1. 개정이유

-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2(회계감사인의 선임 등) 개정(2026.1.1. 시행)에 따라, 지방공기업의 회계감사인을 선임하기 위한 회계감사인 선임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하며, 그 구체적인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의무화됨. 이에 따라 본 규칙에 회계감사인 선임위원회의 설치 근거 및 구성·운영 절차 등을 신설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인용 조항 수정(안 제2조제1항)
- 위원회의 설치(안 제115조)
- 위원회의 구성(안 제116조)
- 위원회 임기와 직무(안 제117조)
- 위원회의 운영(안 제118조)
- 위원의 제척 등(안 제119조)
- 회계감사인의 선임 및 계약체결(안 제120조)
- 준용 규정 변경(안 제132조)

3. 개정 규칙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관계 법령

-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2(회계감사인의 선임 등)
- 「공공기관의 회계감사 및 결산감사에 관한 규칙」 제7조(회계감사인의 선정)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3조의3(회계감사인의 선임 등)

6. 관련부서 의견

- 부패영향평가(감사실) : 원안동의
- 성별영향평가(여성가족과) : 의견없음
- 규제심사(기획예산과) : 해당없음

7. 입법예고 기간 : 2026. 8. 31. ~ 2026. 9. 21. (21일간)

8. 사전협의(승인) 사항 : 해당없음

9.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6년 9월 21일까지 목포시장(도시유산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나. 의견제출처 : (58724)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수문로 32 5층(도시유산과)

다. 제출방법 : 우편, FAX (061-270-8292), 직접 방문 등

10.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청 홈페이지(<http://www.mokpo.go.kr>)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목포시청 도시유산과(☎ 061-270-344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포시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회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목포시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영 제33조의2제1항제3호”를 “영 제35조 제1항제3호”로 한다.

제111조 앞에 절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절 경영분석

제114조 앞에 절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절 결산

제115조 앞의 “제7장 채권관리”를 삭제한다.

제6장제3절(제115조부터 제120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절 회계감사인 선임위원회

제115조(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목포시 지방공기업의 공영개발사업 회계감사를 수행할 회계감사인을 선임하기 위하여 목포시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회계감사인 선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목포시 각종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1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공영개발사업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도시유산과장

2. 공영개발사업 혹은 회계업무 분야에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전문가

3. 시민단체 및 공영개발사업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회계 담당 팀장이 된다.

제117조(위원회 임기와 직무)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이 「목포시 각종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④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9조(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업체의 용역·자문·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2.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3. 그 밖에 심사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위원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제120조(회계감사인의 선임 및 계약체결) ① 회계감사인은 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선임한다.

② 위원회는 회계감사인의 선임을 위하여 회계감사를 수행하려는 회계법인 또는 3명 이상의 공인회계사로 구성된 감사반으로부터 제안서를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제출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계감사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별표 2에 따른 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종합하여 선임대상자를 선정하고, 이를 시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계법인 또는 감사반은 회계감사인으로 선임 될 수 없다.

1. 회계법인인 경우: 「공인회계사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회계법인

2. 감사반인 경우: 그 감사반에 소속된 공인회계사 중 1명 이상이 「공인회계사법」 제2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감사반

⑤ 회계감사인은 선임 당시뿐만 아니라 감사 수행 중에도 제4항에 따른 자격제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알려야 한다.

⑥ 시장은 제4항에 따른 자격제한 여부를 확인한 후 회계감사 계약을 체결한다.

제121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장 채권관리

제126조 앞의 “제8장 보 칙”을 삭제한다.

제126조 및 제127조를 각각 제132조 및 제133조로 하고, 제115조부터 제125조까지를 각각 제121조부터 제131조까지로 한다.

제132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장 보 칙

제132조(중전의 제126조) 중 “「목포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에 의한다”를 “「목포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회계감사인의 선임 등에 관한 적용례) 제115조부터 제120조까지의 개정 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해 회계연도에 대한 회계감사를 위하여 회계감사인을 선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2]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표(제120조제3항 관련)

구분	평가항목 및 평가내용	배점	평점					비고
			A	B	C	D	E	
감사 수행 능력 (35)	① 업 력 - 법인설립일로부터 제안서 마감일까지의 업력	5	15년 이상 (5)	10년 이상 (4)	5년 이상 (3)	3년 이상 (2)	3년 미만 (1)	
	② 공인회계사 수 - 선정 해당연도 제출 마감일 기준 공인회계사 수(수습 공인회계사 제외)	5	20명 이상 (5)	15명 이상 (4)	10명 이상 (3)	5명 이상 (2)	5명 미만 (1)	
	③ 징계현황 - 최근 2년간 감독기관으로부터 받은 징계처분 사실 (법인기준)	5	0건 이하 (5)	3건 미만 (4)	6건 미만 (3)	10건 미만 (2)	10건 이상 (1)	
	④ 주요 사업실적 - 최근 2년간 공공기관 감사실적	20	10건 이상 (20)	8건 이상 (18)	6건 이상 (16)	4건 이상 (14)	4건 미만 (12)	
감사 수행 계획 (65)	⑤ 투입인원 - 감사일정 중 투입인원 수, 구성원 등에 대한 상대평가	15	매우 적절 (15)	적절 (13)	보통 (11)	미흡 (9)	매우 미흡 (7)	
	⑥ 투입시간 (1인당) - 감사일정 중 투입시간, 집중도에 대한 상대평가	15	매우 적절 (15)	적절 (13)	보통 (11)	미흡 (9)	매우 미흡 (7)	
	⑦ 인력의 전문성 - 감사일정 중 투입인력에 대한 경력 및 경험, 자질 등을 상대평가	20	매우 적절 (20)	적절 (18)	보통 (16)	미흡 (14)	매우 미흡 (12)	
	⑧ 회계서비스 제공내용 - 회계관련 자문서비스 제공계획 평가 - 재무적 위험요소 파악 및 개선 권고 등	15	매우 적절 (15)	적절 (13)	보통 (11)	미흡 (9)	매우 미흡 (7)	
합 계		100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	제2조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
①지방공기업법의 관리자는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2항 및 제34조와 동법시행령 제35조제1항과 「목포시 공영개발사업 설치조례」(이하 “설치조례”라 한다)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을 다음 각호와 같이 지정한다. 다만, 영 제33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계약담당 회계공무원은 기업출납원(또는 분임기업출납원)으로 한다.	①----- ----- ----- ----- ----- -----, ---- 영 제35조제1항제3호----- ----- -----.
1. ~ 6. (생략)	1. ~ 6.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절 경영분석
<신 설>	제2절 결산
제7장 채권관리	<삭 제>
<신 설>	제3절 회계감사인 선임위원회
<신 설>	제115조(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목포시 지방공기업의 공영개발사업 회계감사를 수행할 회계감사인을 선임하기 위하여 목포시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회계감사인 선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

<신 설>

다)를 둔다.

②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목포시 각종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1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공영개발사업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도시유산과장

2. 공영개발사업 혹은 회계업무 분야에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전문가

3. 시민단체 및 공영개발사업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

<신 설>

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회계 담당 팀장이 된다.

제117조(위원회 임기와 직무) ① 당 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 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 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 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 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이 「목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 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 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 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 설>

제11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 은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고, 위 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 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 다.

③ 위원회는 긴급한 사유로 회의 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신 설>

있다.

④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9조(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업체의 용역·자문·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2.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3. 그 밖에 심사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신 설>

④ 위원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
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
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제120조(회계감사인의 선임 및 계약

체결) ① 회계감사인은 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선임한다.

② 위원회는 회계감사인의 선임을
위하여 회계감사를 수행하려는 회
계법인 또는 3명 이상의 공인회계
사로 구성된 감사반으로부터 제안
서를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제출받
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
회의 의결을 거쳐 회계감사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별표 2에 따른 평가
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종합하여
선임대상자를 선정하고, 이를 시
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회계법인 또는 감사반은
회계감사인으로 선임 될 수 없다.

1. 회계법인인 경우: 「공인회계사
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회계법인

2. 감사반인 경우: 그 감사반에 소속된 공인회계사 중 1명 이상이 「공인 회계사법」 제2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감사반

⑤ 회계감사인은 선임 당시뿐만 아니라 감사 수행 중에도 제4항에 따른 자격제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알려야 한다.

⑥ 시장은 제4항에 따른 자격제한 여부를 확인한 후 회계감사 계약을 체결한다.

<신 설>

제115조 ~ 제125조 (생 략)

제8장 보 칙

<신 설>

제126조(회계직공무원의 재정보증)
회계직공무원은 재정보증없이
그 직무를 담당하게 할 수 없으며,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은 「목포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에 의한다.

제127조 (생 략)

제7장 채권관리

제121조 ~ 제131조 (현행 제115조
부터 제125조까지와 같음)

<삭 제>

제8장 보 칙

제132조(회계직공무원의 재정보증)

----- 「목포시 회계관리
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133조 (현행 제127조와 같음)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규 칙 명 : 목포시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회계 규칙

○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인)

○ 주 소 :

○ 전 화 번 호 :

규칙(안) 항목별 내용	찬성여부		의견(사유)	기타 참고사항
	찬성	반대		

목포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목포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8. 31.

목 포 시 장

1. 개정이유

- 「지방자치법」에 주민자치회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주민자치회 시범운영을 종료하고 본격 시행
-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위한 개선사항과 시범운영 과정에서 제시된 보완사항을 반영한 조례 개정 추진

2. 주요내용

구분	주요내용
조례 제명	• (현행) 목포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 (개정) 목포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주민자치회 설치근거	• (현행)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 (개정) 「지방자치법」 제17조의2
위원 정수	• (현행) 20명 이상 33명 이내
	• (개정) 20명 이상 30명 이내

구분	주요내용
위원 자격	• (현행) 해당 동에 주민등록 또는 사업장 주소를 가지고 있는 사람 • (개정) 영주권자 등 일정한 자격 갖춘 외국인 추가 * 사업장 주소 제외
위원 선정	• (현행) 위원 선정위원회에서 지역·주민·직능 대표위원 선출 • (개정) 위원 추천운영위원회에서 공개추첨(공개모집 및 추천위원)으로 선정
위원 임기	• (현행) 2년, 연임 가능 • (개정) 2년, 2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
위원 의무	• (현행) 주민의견 수렴, 각종 교육·연수 적극 참여 • (개정) 직무상 비밀유지, 주민자치 관련 교육과정 이수, 사익추구 금지 추가
주민총회	• (현행) 관련규정 없음 • (개정) 연 1회 이상 개최 의무화, 운영세칙 제·개정 등 기능 확대
자치회장 임기	• (현행) 임기규정 없음 • (개정) 2년 1회 연임가능. 연임 이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회장 선출 불가
자치계획 수립	• (현행) 관련규정 없음 • (개정) 자치계획 수립 의무화, 자치계획과 주민참여예산의 연계 노력 규정
연계 법인 설립	• (현행) 관련규정 없음 • (개정) 연계법인을 설립하여 사무위탁, 수익사업 등을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주민자치 협의체 구성·운영	• (현행) 관련규정 없음 • (개정) 지방자치법에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조문 신설
부칙	• 최초 구성 주민자치회는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재산 등을 승계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이 조례에 따른 주민자치회 구성으로 기존 주민자치위원회는 폐지된 것으로 본다. • 기존 및 최초 구성 주민자치회 위원 임기는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3. 조례 개정안 : 별첨

4. 관련 법령

- 「지방자치법」 제17조의2

5. 관련부서 의견

- 예산사항 및 규제심사(기획예산과) : 해당없음
- 부패영향분석평가(감사실) : 해당없음
- 성별영향분석평가(여성가족과) : 해당없음

6. 입법예고기간 : 2026. 8. 31. ~ 2026. 9. 20. [21일간]

7. 사전협의(심의) 대상여부 검토 : 해당없음

8.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6년 9월 20일까지 목포시장(자치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나. 제출방법 : 우편, 팩스(061-270-3579), 직접 방문

다. 의견제출처 : (58613) 전남 목포시 양율로 203(용당동) 목포시청 자치행정과

10.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청 홈페이지(<http://www.mokpo.go.kr>)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목포시청 자치행정과(☎ 061-270-323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조례 개정안

목포시 조례 제 호

목포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목포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목포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7조의2에 따라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동에 해당 행정구역의 주민으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자치회”란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해 동에 설치되고 주민으로 구성되어 주민총회 개최, 자치계획 수립 등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2. “주민자치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란 해당 동의 주민을 대표하는 주민자치회의 구성원을 말한다.
3. “주민총회”란 해당 동에 거주하는 주민은 누구나 참여하여 주민자치 활동과 계획 등 자치활동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주민공론장을 말한다.
4. “자치계획”이란 주민총회 등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주민자치회가 수립하는 주민자치 및 동 지역발전, 민관협력 등에 관한 종합계획을 말한다.

제3조(운영원칙) 주민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2. 주민 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진흥
3. 동별 자율적인 운영
4.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제4조(설치 등) ① 시장은 관할지역의 동에 주민자치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의 명칭은 「○○동 주민자치회」라 한다.

제5조(기능)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주민자치 업무 : 주민총회 개최, 자치계획 수립, 주민 화합 행사, 마을신문·소식지 발간, 지역공동체 형성, 그 밖에 각종 교육 활동, 행사 등 순수 근린자치 영역에서

수행하는 주민자치업무

2. 협의업무 : 동 단위 지역발전계획 수립,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 관련 주민 의견 수렴, 그 밖에 동 행정기능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대한 협의
3. 수탁업무 : 시 및 동 행정기능 중 주민자치센터·작은 도서관 운영, 공원·공중화장실·공용주차장 관리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업무의 수탁 처리

제2장 주민자치회의의 구성 및 운영

제6조(위원의 정수) ① 위원은 20명 이상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제8조제1항의 각 호별 선정비율은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② 주민자치회는 조례로 정한 범위 내에서 주민자치회의 운영세칙(이하 '운영세칙'이라 한다)으로 위원 정수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위원의 자격) ① 위원은 제8조에 따른 추천 또는 공개 모집한 날 현재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해당 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해당 동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있는 사람

② 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은 주민자치회의 위원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
2. 지방의회 의원
3. 제13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로 주민자치회 위원에서 해촉된 사람으로 해촉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③ 공직선거법 제60조 제2항의 활동을 위해 자진 사퇴한 사람은 제2항 제3호에 따른 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다만,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다시 위촉되고자 하는 경우 제8조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선정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제8조(위원의 선정)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 제9조의 위원추첨은 영위원회에서 공개추첨으로 선정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전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청년·장년층, 사회적 약자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공개모집 위원 : 공개모집에 신청하고 주민자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2. 추천모집 위원 : 해당 동 단위의 기관·단체 등 주민공동조직 등에서 추천받아 주민자치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선정 대상 인원이 제6조에서 정한 위원 정수 이하일 경우 추첨하지 않고 전원을 위원으로 선정할 수 있으며, 추가 모집을 한다.
- ③ 제1항의 주민자치 교육과정의 이수능 시장이 인정하는 주민자치활동에 관한 기본 교육과정을 최소 4시간 이상 사전 이수한 것을 의미한다.
- ④ 주민자치회는 제1항에서 선정된 위원 외에 제1항 각 호별 예비후보자 순위를 5명 이내에서 추첨으로 정한다.
- ⑤ 주민자치회는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위원과 예비후보자를 선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명부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⑥ 시장은 제5항에 따른 명부를 접수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위원 선정결과에 따라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 ⑦ 위원의 해촉 등으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시장이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위촉한다. 다만,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않는다.
 1. 예비후보자가 있는 경우에는 명부순위 순으로 위촉한다.
 2. 예비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라 위촉한다.
- ⑧ 시장은 주민자치회 구성 후 위원에 대한 주요 인적사항을 1개월 이내에 공고 등의 방법으로 해당 지역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위원을 새로이 위촉한 경우에도 주요 인적사항을 같은 방법에 따라 해당 지역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 ⑨ 시장과 주민자치회는 위원 모집을 위해 해당 주민들을 대상으로 현수막 게시, 설명회 등 방식으로 홍보할 수 있다.

제9조(위원추첨운영위원회) ① 주민자치회 위원의 투명하고 공정한 선정을 위한 절차 진행 및 관리를 위하여 해당 동에 위원추첨운영위원회(이하 “추첨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추첨위원회 위원은 제7조에 따른 자격을 가진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5명 이내로 구성하여 동장이 위촉하고, 추첨위원회 위원은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
 1. 동장 추천 : 2명 이내
 2. 해당 동 각급 학교, 기관, 단체 추천 : 3명 이내
- ③ 추첨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추천된 위원 중에서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각각 호선한다.
- ④ 추첨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추천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동 주민자치회 위원 추천대상자 자격 유무 확인
2. 주민자치회 위원 추천 절차 진행 및 관리
3. 선정된 주민자치회 위원의 명단 작성 및 공표 등
4. 선정된 주민자치회 위원 외에 제8조제4항에 따른 예비후보자 명단 작성

⑥ 추천위원회는 해당 동의 주민자치회 위원 위촉이 완료될 때까지 존속한다.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 정수가 최소인원 미달시 2회 이상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8조 제7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 임기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의 연임 시에도 원칙적으로 추천절차를 거치되, 주민자치회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전체 위원 정수의 3분의 1 범위 내에서 직전 임기 위원 중 연임자를 우선하여 추천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대우) 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각종 회의 참석 및 주민 의견 수렴 노력
2. 주민자치회의 의결 사항 준수 및 주민총회 결과 존중
3. 개인정보 보호 및 직무상 알게 된 비밀유지
4. 주민자치 관련 교육과정의 이수

② 위원은 「지방자치법」 제17조의2제7항에 따라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가지며, 「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제7호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③ 위원의 주민자치회 활동은 공익 실현의 목적에 적합하여야 하며, 사익을 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위원의 해촉) ①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없이 해당 위원을 해촉하여야 한다.

1. 제7조 제1항 각 호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2. 제7조 제2항 제1호부터 제3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선거운동을 하거나, 「지방자치법」 제17조의2제7항에 따른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경우

②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법」 제17조의2제7항에 따른 권한남용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제12조제3항에 따른 사익추구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4. 직무태만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③ 위원은 다른 위원에게 제2항 각 호의 해촉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連書)로 해당 위원의 해촉을 자치회장에게 요구할 수 있고, 주민자치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거쳐 해당 위원의 해촉을 시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자치회장) ① 주민자치회에 주민자치회의 장(이하 “자치회장”이라 한다.) 1명과 부회장 3명 이내에서 둘 수 있으며, 자치회장과 부회장은 재적위원 2분의 1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2분의 1 이상 득표자가 선출된다.

②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를 대표하며 주민자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③ 자치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회장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④ 자치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자치회장 연임 이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자치회장으로 선출될 수 없다.

⑤ 자치회장 궐위시 6개월 내에 자치회장을 선출하며, 임기는 전임 회장의 잔여임기로 한다. 다만,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일 경우 선출하지 않는다.

⑥ 자치회장 후보로 추천된 위원은 자치회장 선출 전에 주민자치회의 운영 계획 및 활동 방향 등을 발표할 수 있다.

제15조(회의 등) ① 주민자치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운영하며, 정기회의는 월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자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동장이 자치회장과 협의하였거나 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회의개최 통지는 자치회장 명의로 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주민자치회는 해당 동의 관계 공무원에게 회의 참석요청을 할 수 있으며, 해당 동장은 주민자치회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④ 주민자치회는 수행업무 중에서 주요사항에 대하여 문서회람, 공고 등을 통해 주민의 일부 또는 전체의 의견을 듣거나 의견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간사 또는 사무국) ① 자치회장은 위원 또는 주민을 간사로 선임하거나, 사무국을 설치하여 주민자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국을 설치하는 경우 근무자 배치, 수행업무 등 사무국의 운영

에 관한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③ 시장은 간사 및 사무국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주민자치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7조(감사) ① 주민자치회에 감사 2명을 두며 위원 중 호선한다. 다만,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외부 전문가를 감사로 임명할 수 있다.

② 감사는 주민자치회의 회계와 주민자치회에서 결정한 사항의 집행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주민자치회와 주민총회에 보고·제출하여야 하며, 연 1회 이상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18조(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① 주민자치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는 소관 업무 중 특정 현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존속기한을 정하여 운영하는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는 위원과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으로 구성할 수 있다. 다만, 운영세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동 소재 사업장·학교·기관 임직원의 참여를 허용할 수 있다.

④ 분과위원장 및 특별위원장은 제3항의 위원 중 호선한다.

⑤ 분과위원장 및 특별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운영 결과를 주민자치회에 보고해야 한다.

⑥ 그 밖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19조(주민총회) ① 주민총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주민자치회에서 의결된 안건을 상정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주민자치회의 의결에 따라 개최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주민총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는 권한을 가지며, 제1항에 따라 상정된 안건은 참석 주민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1. 주민자치회 활동 평가
2. 동 행정사무에 대한 의견제시
3. 동의 다음 연도 자치계획안
4. 동에 배정된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편성안
5. 연계 법인 설립 추진 및 운영 보고
6. 운영세칙의 제정·개정 내용의 보고 및 시행
7. 주민조례청구, 주민투표청구, 주민감사청구 등 주민참여와 관련된 내용의 보고 및 추진
8. 그 밖의 지역 현안, 주민자치, 민관협력 등에 관한 사항의 보고와 추진 등

- ③ 주민자치회는 주민참여와 숙의를 촉진하기 위하여 주민총회일 1개월 전부터 상정 안건 홍보, 주민설명회, 의견수렴 등을 진행하여야 한다.
- ④ 주민자치회는 많은 주민들의 참여와 주민합의를 형성하기 위하여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투표를 진행할 수 있다.
- ⑤ 주민자치회는 해당 동의 관계공무원에게 주민총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장 및 해당 동장은 주민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은 주민자치회가 출석을 요청한 경우에 한한다.
- ⑥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에서 지역 주민이 직접 발언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 ⑦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 개최 후 14일 이내에 개최결과 및 회의록을 작성하여 동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30일 이상 공개한다.

제20조(자치계획의 수립 등) ① 주민자치회는 주민의 의견과 요구를 수렴하여 다음 각 호의 세부계획으로 구성된 자치계획안을 수립한다.

1. 주민자치회 운영계획
 2. 동 지역발전 및 활성화 계획(중장기 계획 포함 가능)
 3. 동 행정사무 수탁 및 추진계획
 4. 주민자치센터 운영계획
 5. 각 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사업계획
 6. 동에 배정된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편성안
 7. 그 밖의 주민자치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계획(중장기 계획 포함 가능)
- ② 제1항에 따른 자치계획안은 주민총회에 상정하여 결정하고,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에서 결정된 자치계획안을 14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한다.
- ③ 시장은 주민자치회가 수립한 자치계획과 주민참여예산이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④ 시장은 주민의 공론인 자치계획안이 원활히 실행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협력과 지원을 할 수 있고,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치계획안에 대한 이행계획 및 검토결과 등을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주민자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⑤ 주민자치회는 제4항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결과를 참고하여 자치계획을 확정·의결하고, 확정된 자치계획을 동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3장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관계

제21조(지방자치단체의 지원) ① 시장은 주민자치회가 동 주민을 위한 공공사업을 추진하거나 제5조의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 행정적 지원 및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주민자치회가 대표적 주민참여기구로서 동 단위 주민참여예산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도시재생주민협의체 등 주민참여기구를 대체하거나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온라인 참여 여건을 조성하는 등 주민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위원 및 주민, 관계 공무원의 주민자치 관련 자질 함양과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시책 수립을 위하여 해당 동장 및 자치회장은 시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들어 해당 지역 동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주민자치회 운영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⑦ 시장은 주민자치회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전용 사무실을 제공할 수 있다.

⑧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으로 하여금 주민자치회의 설치·운영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⑨ 시장은 위원 또는 희망하는 사람에 대하여 주민자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⑩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주민자치회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해당 동의 주요 시책 및 예산사업과 관련된 정보를 미리 주민자치회에 제공할 수 있다.

제22조(관계기관 등과의 협조) ①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는 통(統) 단위의 주민조직 및 동 단위의 기관·단체 등과 협력하여 돌봄(통합돌봄 포함), 마을환경개선, 재난안전, 생명보호(자살예방, 고독사 방지) 등 마을공동체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제23조(정보공개) ① 시장은 주민자치회가 제8조, 제17조, 제19조, 제20조 및 제29조에 따른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하는 경우, 주민자치회에 해당 정보의 공개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주민자치회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직접 해당 정보를 동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③ 자치회장은 시장이 제21조제10항에 따른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시장에게 해당 정보의 공개를 요청할 수 있다.

제24조(감독) ① 시장은 주민자치회에 위탁한 업무와 재정지원 분야 등에 관하여 관련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하여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③ 주민자치회는 제21조제1항의 재정적 지원을 받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의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제4장 보칙

제25조(보험) 시장은 제5조의 사무를 수행하는 주민자치회 종사자가 신체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에 대비하여 단체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다.

제26조(홍보용 물품 등의 제공) 주민자치회는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주민에게 홍보용 물품 및 기념품을 제공할 수 있다.

1. 위원 모집을 위해 주민자치회를 홍보하는 경우
2. 자치계획 수립·실행과 관련된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3. 주민총회 개최에 따른 상정 안건 홍보, 투표 참여 독려 등 주민 참여를 유도하는 경우

제27조(연계 법인 설립) ① 주민자치회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의 안정적 수행과 책임성 확보를 위하여 주민의 주도로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 등을 설립할 수 있다.

1. 계약 당사자로서 법적 책임을 부담하는 대규모 시설 및 사무위탁, 수익사업 운영
2. 상시 근로자를 고용하여 운영하는 사업
3. 그 밖에 법인격이 필요한 사업

② 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주민자치회와의 협력관계
2. 이익 및 잉여금의 처리
3. 해산 시 잔여재산의 귀속
4. 지역사회 기여를 위한 비영리 활동 영역과 주요 내용

③ 주민자치회는 법인의 이사회 또는 운영위원회에 이사 또는 위원을 추천할 수 있다.

④ 주민자치회는 법인의 운영 현황을 정기적으로 주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8조(주민자치협의체의 구성·운영) ①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법」 제17조의2 제10항에 따라 제5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주민자치회와 연계하여 주민자치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협의체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자치협의체의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29조(운영세칙) ① 그 밖에 주민자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② 제1항의 운영세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민주적 의사결정 절차 및 과정의 공개에 관한 사항
2. 주민 간 갈등 발생 시 조정 및 해결에 관한 사항
3. 위원의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사항
4. 위원의 구성 및 선정방법
5. 간사의 선임 또는 사무국의 설치, 사무국의 규모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7. 주민총회 개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 계약 및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
9. 연계법인·공유자원·공유자산 관리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주민자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주민자치회는 확정된 운영세칙을 동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30조(제점토기한) 시장은 이 조례에 대하여 조례 시행일부터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1조(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0조 규정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법」 제17조의 2의 개정규정에 따라 구성된 주민자치회로 본다.

② 최초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는 「목포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재산 등을 승계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이 조례에 따른 주민자치회 구성으로 기존 주민자치위원회는 폐지된 것으로 본다.

③ 제1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최초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 위원과 기존 주민자치회 위원의 임기는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이 조례 시행 당시 재임 중인 위원은 제7조 및 제8조 개정 규정에 따라 임명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이 조례 시행과 함께 「목포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장 주민자치위원회 관련 조항은 삭제한다.

② 이 조례 시행과 함께 「목포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 제16조의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변경한다.

③ 이 조례 시행과 함께 「목포시 저소득 주민의 재래식화장실 정비지원 조례」 제10조제3항제2호의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변경한다.

입법예고 의견 제출서

☐ 규 칙 명 : 목포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규칙(안) 항목별 내용	찬성여부		의견(사유)	기타 참고사항
	찬성	반대		